

漁場管理法・施行令・施行規則

2007. 6. 29

海洋水産部

◁ 목 차 ▷

쪽번호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5	제2조(정의)		
7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제2조(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8	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제3조(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	
10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4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방법과 절차 등)
11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제5조(어장환경조사의 내용 등)	
13	제7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제6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14	제8조(면허·허가동시갱신)	제7조(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17	제9조(어장휴식)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18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19	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20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제11조(수산종묘의 살포 등)	제3조(수산종묘살포 등)
22		제12조(어장청소 등)	제4조(어장청소 등)
23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24	제1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제6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25	제15조(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26	제16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		
26	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제13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제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28			제8조(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28			제9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쪽번호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29			제10조(어장정화·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29	제18조(등록의 제한)		
30	제19조(영업의 승계)		제11조(영업의 승계 신고)
31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32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32	제22조(청문)		
32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34	제24조(손실보상)		
34	제25조(국고보조)		
34	제26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35	제27조~제28조(벌칙)		
36	제29조~제30조(벌칙)		
36	제31조(몰수)		
37	제32조(양벌규정)		
37	제33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개정 2007. 4. 11 법률 제8378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養殖)하는 사업을 말한다. 	<p>개정 2007. 6. 26 대통령령 제20107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개정 2007. 6. 29 해양수산부령 제374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3. "면허·허가동시갱신"이란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 새로운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4. "어장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p> <p>5.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 <p>가.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p> <p>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p> <p>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6.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p> <p>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3.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p>	<p>제2조(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p>	<p>제3조(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어장에 대하여 법 제4</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 2.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4.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조에 따른 어장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청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 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p>	<p>제4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나친 어장개발로 인하여 해당 어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어장 2. 지나친 어장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어장에서의 분쟁이 예상되는 어장 3. 해당 어장에서의 장기간의 양식(養殖)으로 인하여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어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p>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해역의 오염 현황, 어장의 생산성 및 어장관리를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3. 어장관리해역의 어업 종류별 어장의 건수·면적 및 어장구역도 4. 어장관리해역의 어업 생산실적 5.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조제4항에</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5조(어장환경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어장의 분포·면적 등 이용 상황</p>	<p>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p> <p>2. 어장관리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 기재한다)</p> <p>3. 어장관리해역에 포함되는 어장의 현황(면허·허가어업의 종류, 면허·허가의 건수 및 어장면적 등을 말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공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어장의 환경오염과 오염물질의 발생·유입 현황</p> <p>3.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⑤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제7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은 제6조에 따라 어장환경을 조사한 결과 어장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어장휴식이나 새로운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를 위한 특별해역(이하 "어장관리특별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어장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특별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p>	<p>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p> <p>제6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은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범위 3.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종류별 어장의 건수·면적 및 어장구역도 4.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생산실적 5. 그 밖에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⑤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면허·허가동시갱신) ①시장·군수·구</p>	<p>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어장관리특별해역에 있는 어장의 현황(면허어업·허가어업의 종류와 면허·허가의 건수 및 어장별 면적 등을 말한다)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제7조(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①</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안의</p>	<p>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면허·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사유 2.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면허·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다른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p>	<p>업면허·어업허가의 내용</p> <p>3. 면허·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면허·어업허가의 내용</p> <p>4. 면허·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p> <p>5.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p> <p>⑥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어장휴식)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어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의 휴식기간</p>	<p>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중에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p> <p>⑥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장휴식의 사유 2.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면허 번호, 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4. 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p>④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p> <p>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어장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하고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自淨能力)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①해양수산부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의 결과 어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는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에 해당하는 경우 <p>②법 제10조제2항에서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등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금지하는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관리해역을 말한다.</p> <p>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2.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 <p>1.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수산동식물</p> <p>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 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시기 및 해역 등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p> <p>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p>	<p>제한·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p> <p>3.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11조(수산종묘의 살포 등) ①「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업면허를</p>	<p>어장관리법시행규칙</p> <p>제3조(수산종묘살포 등) ①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살포하거나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청소 주기(週期)나 수산종묘의 종류·살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 청소한 것으로 본다.</p> <p>③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패류·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 중 종묘의 살포가 가능한 품종의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살포하여야 한다.</p> <p>②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어장에 수산종묘를 살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종묘의 살포 주기를 포함한 살포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의 살포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종묘의 구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살포하는 수산종묘의 세부 종류, 수산종묘의 살포 절차 및 살포 수량 등 필요한 사항</p>	<p>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를 살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종묘살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수산종묘살포계획서를 제출 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또는 해당 어업인이 종묘의 구입증명서 등으로 수산종묘 살포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2조(어장청소 등) ①「수산업법」 제8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 따른 이동성구획어업을 제외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②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p>	<p>제4조(어장청소 등) ①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①어업 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p>	<p>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cm³ 이상) 제품 2.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p> <p>③어업인이 그물·बाट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p>		<p>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p> <p>②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p> <p>제6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p> <p>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 2. 정화·정비가 필요한 대상 어장의 기준 3. 어장정화·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4.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행위 방지 및 적정관리 방안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p>		<p>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장정화·정비의 대상 어장 및 기간 2. 어장정화·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3.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실시하여야 한다.</p> <p>제16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p>	<p>제13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 장비명세서 1부 6.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빙 서류 1부 <p>②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자격증명서 및 선박원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8조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p> <p>제9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법 제 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 		<p>제10조(어장정화·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제19조(영업의 승계) ①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p>		<p>제11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제1항에 따라 영업승계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p> <p>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3조·제46조 및 제58조를 위 		<p>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p> <p>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 칙</p> <p>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금지, 처리·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준용한다.</p> <p>제22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①제6조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어장에</p>		<p>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출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어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어장의 관리인(이하 "어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p> <p>③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시료의 채취 2. 시설물의 사용 3. 시설물의 제거 <p>④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p>		<p>②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4조(손실보상) ①해양수산부장은 제 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5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p> <p>제26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p>	<p>제14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별 칙</p> <p>제2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2. 제13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p>②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8조(벌칙)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수</p>	<p>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산동식물을 소지·운반한 자, 처리·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 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경영한 자 <p>제30조(벌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묘를 살포하지 아니하거나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1조(몰수) ①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제32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p> <p>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p>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p>	<p>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한자</p> <p>3.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 조사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p>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과태료의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8378호, 2007.4.1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어장청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어장부표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제3조(규제규정과 관련된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7조제2호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실효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어장정화·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29일 당시의 「수산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연안수역정화를 실시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권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p> <p>②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시·도</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지사가 실시한 면허등동시갱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본다.</p> <p>③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을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으로 본다.</p> <p>④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을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도록 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p>		

어 장 관 리 법	어장관리법시행령	어장관리법시행규칙
<p>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2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p> <p>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장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 시행령

[별표 1]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동 룝 기 준
1.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2.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직무분야의 해양·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또는 해양조사 종목 중 1개 이상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자본금	2억원 이상
4. 시설·장비	○ 인양장비 :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 기타 :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비 고

-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선박 외의 선박을 사용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 없이 별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선박등기부상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정비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4호의 등록기준에 정한 기본장비 등을 갖추고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호의 등록기준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를 제외한다.
- 제3호의 등록기준에서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본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제3항 관련)

위 반 사 항	관련 규정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법 제33조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여장에의 출입, 조사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법 제33조제1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비고 :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시행규칙

[별 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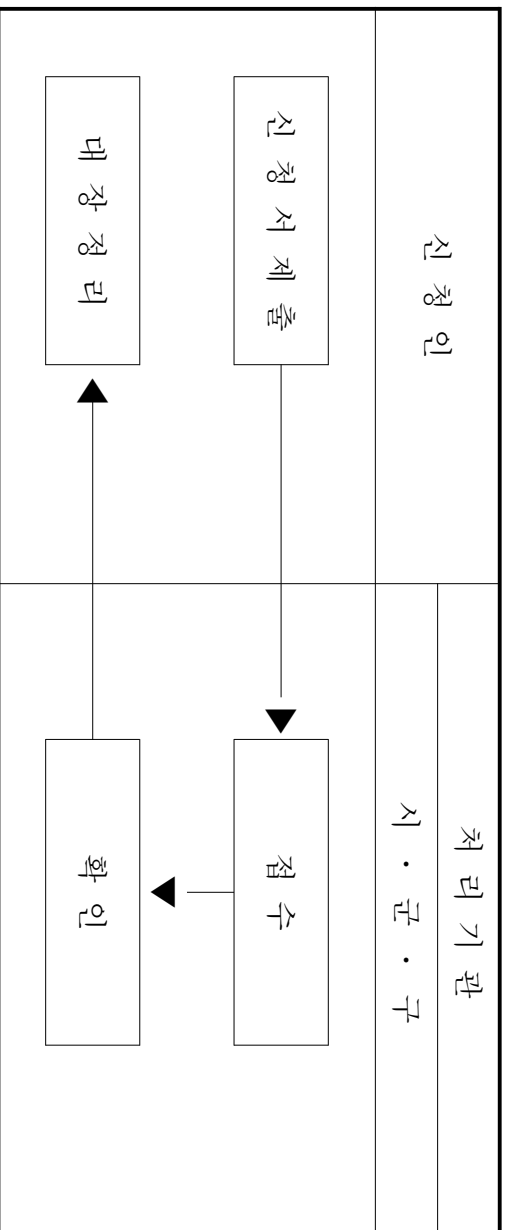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0조	등록취소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기술인력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자본금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시설·장비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8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90일	등록취소 영업정지 180일 영업정지 180일 영업정지 90일	-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180일	
3.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등록취소	-	-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3조·제4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법 제20조	등록취소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어 장 관 리 대 장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년월일 ~ 년월일
어업의 종류 및 어장 현황 어장면적 (장m×폭m) 어장위치	ha (장m×폭m)	어구명칭 시설규모	
어업권자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권자통보내용			
어업권자통보내용 회 ○기간: 부터 ~ 까지(일간) ○방법: ○수거예정량:			
어업권자통보내용 회 ○기간: 부터 ~ 까지(일간) ○방법: ○수거예정량:			
어업권자통보내용 회 ○기간: 부터 ~ 까지 ○장소: ○종류: ○수:			
어업권자통보내용 회 ○기간: 부터 ~ 까지 ○장소: ○종류: ○수:			
어업권자통보내용 회 ○기간: 부터 ~ 까지 ○장소: ○종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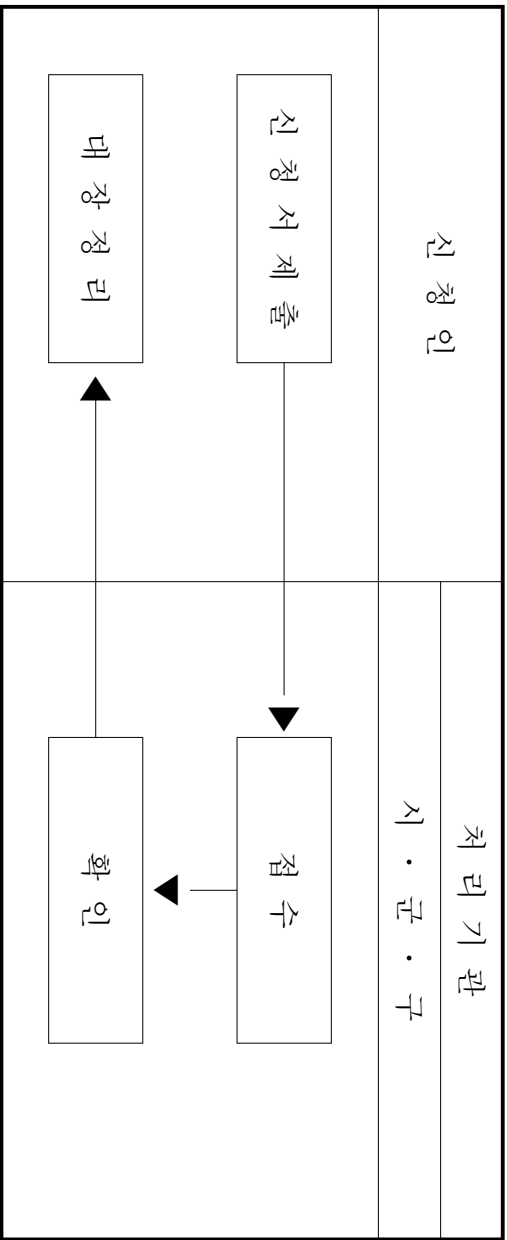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어장청소실시계획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면허어업			면허면적
어장청소	면허기간	일시	
		장소	
	방법		
		수거예정량(톤)	
기타사항			
<p>「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 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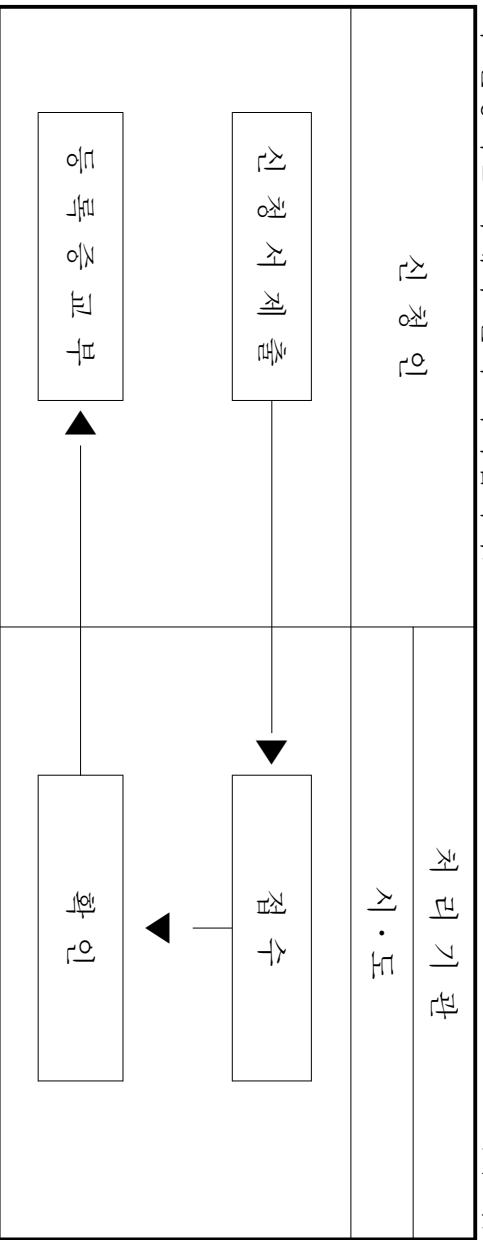


여장정화 · 정비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선박의 선명, 마력 등	주소			
	선명(선박번호)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장비명	수량	성능 등	
주요장비				
기술인력	분야	성명	자격증번호 등	
자본금 현황				
사무실현황	소유주	전용면적(m ²)	소재지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여장정화 · 정비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정관 1부 2.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 장비명세서 1부 6.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기술자격증명서 3. 선박원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등록 제 호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박의 선명, 마력 등	선명(선박번호)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주요장비	장비명		수량		규격 및 성능				
	분야		성명		자격증번호 등				
기술인력									
변경등록사항	<p>「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도지사 </p>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6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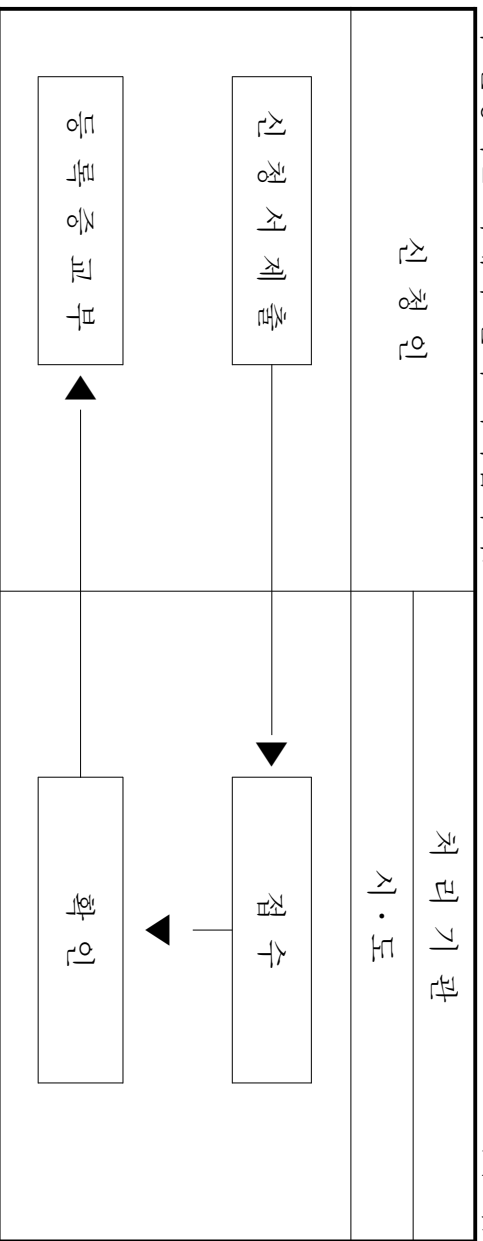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

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일자	주소					
등록연월일						
선박의 선박명, 마력 등	선명(선박번호)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장비명	수량	규격 및 성능			
기술인력	분야	성명	자격증번호			
사무실 소재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항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연월일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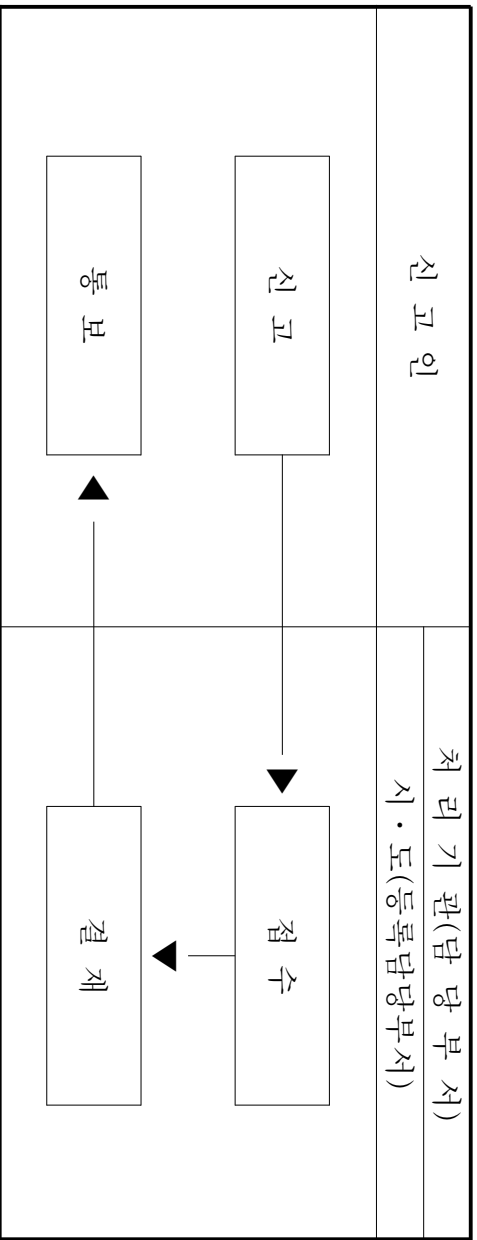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재개업 <input type="checkbox"/>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주 시
신 고 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진 화 번 호	
⑦업종 및 등록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업 종 명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등록번호
		1. 당시사정		
		2. 업종전환		
		3. 기타사유		
⑧(휴업, 재개업, 폐업)사유				
⑨비 고				
「어장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휴업, 재개업,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9호서식]

영업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주 시	
①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②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③영 업 소	명칭(상호)	변 경 전 변 경 후	
	영업의 종류		
④등 록 번 호	소 재 지	(전화 :)	
	⑤승 계 사유	<input type="checkbox"/> 양도·양수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어장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시·도지사 귀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구 비 서 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영업 양도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호적등본
	합병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화추진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취 분 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취분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경고 <input type="checkbox"/> 영업정지 <input type="checkbox"/> 등록취소		
등 록 번 호			
법 조 문 (위 반 내 용)	<p>「어장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도지사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우 - 주소 과 과장	기 관 명 /전화() - /전송() - 사무관(또는 서기관)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제목 여장출입통지 수신기관명 인			
1. 「여장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 여장에 출입하고자 통지합니다. 2. 여장출입통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입 업무공무원	소속 성명	직급 전화번호	
출입일시 및 여장	일시(기간)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여장 위치 (면·허가번호)	시·도 군·구 읍·면·동 번지	
출입의 목적과 사유			
조사시료의 채취	종류	수량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제거	종류		
출입할 여장의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어장환경조사공무원 증표

(앞 쪽)

어장환경조사공무원 증	
성 명	기 관 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사 진 (3cm×4cm)</div>	

55mm×80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No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어장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인